

대법원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자료 협조요청을 하던 중 원전산업정책에 관여하였던 공무원 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3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감으로써 방실에 침입하고, 제3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신이 남겨둔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용전자기록 등손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60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월성1호기 가동중단 의결까지의 상황
 - 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한 2018. 6. 15.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의 실무자로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 담당
 - 2018. 4. 초순경 산업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정책의 변화
 - 2018. 6. 15.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의결

- 2018. 6.경 피고인 3의 육아휴직 후 A 사무관이 피고인 3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물려받아 사용(이 사건 파일 존재) ⇒ 2019. 2. 15.경 A 사무관이 기존 컴퓨터 사용기간 경과로 컴퓨터 교체(이 사건 파일 보관) 후 기존 컴퓨터 폐기

▣ 감사원의 감사 개시 이후 피고인 3의 파일 삭제까지의 상황

- 2019. 10. 1. 국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 ⇒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 개시
- 2019. 10. 초순경 피고인들은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요구하는 의결을 한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알게 됨
- 2019. 11.경 감사원의 피고인 3에 대한 면담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 2019. 11. 22. 감사원의 산업부에 대한 실지감사 실시 통보
- 2019. 11. 26. 감사원의 산업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 2019. 11. 27.경 피고인들 및 산업부는 '월성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등은 제외하고 공식적인 최종본 문서 일부만을 감사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후 감사원에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
- 2019. 11. 28.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실시 계획 마련
- 2019. 12. 1. 피고인 3이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파일 삭제(☞ 이 사건 공소사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 방실침입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피고인 3이 사용한 뒤 A 사무관이 인계받아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일요일인 2019. 12. 1. 23:00경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

입권한 없이 들어가 침입함

▣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 피고인 3은 그때부터 12. 2. 01:30경까지 그곳에 있는 A 사무관의 업무용 컴퓨터 '예전 파일' 폴더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530개 파일('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함

2. 소송경과

▣ 제1심 : 방실침입 부분 무죄,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분 유죄

- 피고인 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2, 3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원심 : 유죄 부분 파기, 각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항소기각 ➡ **모두 무죄**

● 방실침입

- 피고인 3이 2019. 12. 1. 23:00경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공용전자기록등손상

- 이 사건 파일이 공무소인 산업부 내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3에게는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A 사무관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의 삭제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하여 산업부나 원전산업정책과 내에 존재하는 공용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감사원법 위반**

-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란 감사원이 행하는 모든 유형의 감사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감사만을 의미함
- 2019. 11. 22. 이전 감사원의 피고인 3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임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 2019. 11. 22. 이후 실지감사 통보 이후 피고인 3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음
- 2019. 11. 26. 자료제출 요구도 목적물을 제출할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등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활동으로 평가할 수 없음
- 2019. 11. 28. 이후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도 감사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음
-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하여 감사방해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피고인 3이 출입권한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사실상 평온을

1) 제51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

해한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파일이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3에게 파일 삭제의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감사의 적법성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다. 판단 내용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방실침입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